

2025년도 초기창업패키지 창업기업 모집공고

유망 창업 아이템 및 기술을 보유한 초기창업기업의 사업 안정화와 성장을 지원하는 『2025년도 초기창업패키지』에 참여할 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.

2025년 2월 17일
중소벤처기업부 장관

- ※ K-Startup 누리집 가입 시 실명인증이 되지 않는 경우 서울신용평가정보(SCI)를 통한 사전 실명등록이 필요합니다. 온라인 접수 전 필히 등록해 주시길 바랍니다.
 - ① 실명 등록 대상 : 개명인, 외국인, 미성년자 등 인터넷 실명 확인 불가능자
 - ② 실명 등록 경로 : www.siren24.com (☎1577-1006) · 실명 등록에 최대 3일 소요
- ☞ K-Startup 누리집 > 고객센터 > 일반메뉴얼 > K-Startup 창업기업 실명등록 매뉴얼 참고
- ※ 최종 선정 통보된 예비 선정기업은 통보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「초기창업패키지」 협약체결 약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
1

사업 개요

- 사업목적** : 유망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초기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자금 및 창업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사업 안정화 및 성장 지원
- 지원대상** : 창업 후 3년 이내 초기창업기업*
 - * 신청자격은 동 공고 '3. 신청자격 및 요건' 참조
 - ** 초기창업패키지는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9호」에 따른 기술창업 지원사업으로 단순 카페 운영, 도·소매, 유통 등은 지원 불가

- 지원내용** : 사업화 자금 (최대 1억원, 평균 0.7억원), 창업프로그램 등

사업화 자금	+	창업프로그램*
시제품 제작, 마케팅, 지식재산권 출원·등록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비용 지원		시장진입, 투자유치, 실증 검증 등 주관기관별 창업프로그램 운영

* 주관기관별 창업프로그램은 '[별첨 3] '주관기관 소개자료' 참고

- 협약기간** : 협약 시작일로부터 9개월 이내

- 선정규모** : 총 430개사 내외

* 주관기관별 선정 규모는 신청·접수 결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□ 지원내용 : 사업화 자금 및 주관기관별 창업프로그램 등

구분	지원 세부 내용																					
사업화 자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시제품 제작, 지재권 취득, 사업모델 (BM) 개선,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평균 0.7억원 (최대 1억원) 지원 *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화 자금 (정부지원사업비) 차등 지원 ** 사업화 자금 (정부지원사업비)은 신청자(기업)의 신청 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 • 총사업비 = 정부지원사업비 70% 이하 + 자기부담사업비* 30% 이상 * 자기부담사업비(30% 이상) : 현금 10% 이상 + 현물 20% 이하 ** 현물은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고용인력의 인건비, 사무실 임차료, 보유 기자재 등으로 부담 < 총사업비 구성 및 예시 (정부지원사업비 7,000만원인 경우) > 																					
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>총 사업비</th> <th rowspan="2">정부지원사업비</th> <th colspan="2">창업기업 자기부담사업비</th> </tr> <tr> <th>현금</th> <th>현물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100%</td> <td>총사업비의 70% 이하</td> <td>총사업비의 10% 이상</td> <td>총사업비의 20% 이하</td> </tr> <tr> <td>1억원 (100%)</td> <td>7,000만원 (70%)</td> <td>1,000만원 (10%)</td> <td>2,000만원 (20%)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총 사업비	정부지원사업비	창업기업 자기부담사업비		현금	현물	100%	총사업비의 70% 이하	총사업비의 10% 이상	총사업비의 20% 이하	1억원 (100%)	7,000만원 (70%)	1,000만원 (10%)	2,000만원 (20%)							
	총 사업비			정부지원사업비	창업기업 자기부담사업비																	
		현금	현물																			
	100%	총사업비의 70% 이하	총사업비의 10% 이상	총사업비의 20% 이하																		
	1억원 (100%)	7,000만원 (70%)	1,000만원 (10%)	2,000만원 (20%)																		
	< 사업화 자금 집행 비목 >																					
	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비 목</th> <th>비목 정의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재료비</td> <td>•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, 데이터 등을 구입하는 비용</td> </tr> <tr> <td>외주용역비</td> <td>• 창업기업이 자체적으로 시제품 제작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,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</td> </tr> <tr> <td>기계장치 (공구기구, 비품, SW 등)</td> <td>•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일정 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계 또는 설비, 비품을 구매하는 비용</td> </tr> <tr> <td>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</td> <td>• 사업계획서 상의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 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·등록 관련 비용</td> </tr> <tr> <td>인건비</td> <td>• 창업기업 소속 직원이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,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(대표자는 현물로만 계상 가능) * 신청기업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는 인건비 지급 불가</td> </tr> <tr> <td>지급수수료</td> <td>• 사업화를 위한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비용 (기술이전비,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,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, 멘토링비, 시험·인증비, 기자재 임차비 등)</td> </tr> <tr> <td>여비</td> <td>• 창업기업의 임직원이 소재지를 벗어나 타 지역 또는 타 국가로 출장 등의 사유로 집행하는 비용</td> </tr> <tr> <td>교육훈련비</td> <td>• 창업기업의 임직원이 사업화를 위해 기술 및 경영교육 이수 시 집행하는 비용</td> </tr> <tr> <td>광고선전비</td> <td>• 창업기업의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,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, 포장 디자인비, 일간지 등의 광고 게재,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비 목	비목 정의	재료비	•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, 데이터 등을 구입하는 비용	외주용역비	• 창업기업이 자체적으로 시제품 제작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,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	기계장치 (공구기구, 비품, SW 등)	•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일정 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계 또는 설비, 비품을 구매하는 비용	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	• 사업계획서 상의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 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·등록 관련 비용	인건비	• 창업기업 소속 직원이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,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(대표자는 현물로만 계상 가능) * 신청기업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는 인건비 지급 불가	지급수수료	• 사업화를 위한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비용 (기술이전비,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,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, 멘토링비, 시험·인증비, 기자재 임차비 등)	여비	• 창업기업의 임직원이 소재지를 벗어나 타 지역 또는 타 국가로 출장 등의 사유로 집행하는 비용	교육훈련비	• 창업기업의 임직원이 사업화를 위해 기술 및 경영교육 이수 시 집행하는 비용	광고선전비	• 창업기업의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,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, 포장 디자인비, 일간지 등의 광고 게재,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
	비 목	비목 정의																				
	재료비	•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, 데이터 등을 구입하는 비용																				
외주용역비	• 창업기업이 자체적으로 시제품 제작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,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																					
기계장치 (공구기구, 비품, SW 등)	•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일정 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계 또는 설비, 비품을 구매하는 비용																					
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	• 사업계획서 상의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 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·등록 관련 비용																					
인건비	• 창업기업 소속 직원이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,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(대표자는 현물로만 계상 가능) * 신청기업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는 인건비 지급 불가																					
지급수수료	• 사업화를 위한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비용 (기술이전비,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,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, 멘토링비, 시험·인증비, 기자재 임차비 등)																					
여비	• 창업기업의 임직원이 소재지를 벗어나 타 지역 또는 타 국가로 출장 등의 사유로 집행하는 비용																					
교육훈련비	• 창업기업의 임직원이 사업화를 위해 기술 및 경영교육 이수 시 집행하는 비용																					
광고선전비	• 창업기업의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,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, 포장 디자인비, 일간지 등의 광고 게재,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																					

창업 프로그램	• 주관기관의 강점과 특성을 반영하여 초기창업기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제공	
	유형	프로그램 예시
	① 시장진입	판로개척, 네트워킹, 민간 연계, 글로벌 연계
	② 투자유치	투자 교육, 모의 및 실제 투자 IR
	③ 실증 검증	멘토링, 기술 실증 등
④ 자율 프로그램	주관기관이 초기창업기업의 수요를 반영하고 자체 보유한 강점과 역량을 투입하여 지원하는 기관별 맞춤형 프로그램	

3

신청자격 및 요건

□ 신청자격

-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,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2조제2호·제2의2호, 제2조제3호·제3의2호, 제2조제10호에 따른 초기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 3년 이내인 자

< 신청 자격 세부 조건 >

▶ 신청가능 업력 : 2022년 2월 17일 ~ 2025년 2월 17일

- **개인사업자** : 사업자등록증 상 '개업연월일' 기준
- **법인사업자** : 법인등기부등본 상 '법인설립등기일' 기준
- * 개인·법인사업자 모두 사업 개시 및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
-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, 대표자 전원이 '신청자격'에 해당되고, '신청 제외 대상'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
- 다수의 사업자등록증(개인·법인)을 보유한 경우, 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신청 자격 적합 여부 결정 (**붙임 2 창업 여부 기준표를 참고하여 신청 전 필히 확인**)
- *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 기준으로 이전에 개시한 사업자(개인, 법인)와의 창업 여부 확인 필수
- 본점과 지점이 있는 경우 본점 사업자로만 신청 가능하며, 중복 신청한 경우 본점을 기준으로 요건 검토 예정
-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제2조제2의2호의 국외 창업에 해당할 경우, 국내·국외 창업기업의 업력이 모두 공고일 기준 3년 이내이어야 하며, 반드시 보유한 국내 영업소로 신청(해외 연락사무소, 사업자(국외 사업자 등)는 신청접수 불가)

□ 신청 제외 대상

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(기업)

< ① 조건 예외 대상 (사업 신청·접수 마감일 기준) >

1.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
2.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또는 개인워크아웃 제도, 새출발기금 제도를 통해 채무 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
3.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,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
4. 신용보증기금·기술보증기금의 '재도전·재창업 재기지원보증'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·신용회복위원회의 '재창업 자금지원'을 받은 자

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(기업)

< ② 조건 예외 대상 (사업 신청·접수 마감일 기준) >

1. 국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
2. 국세·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

③ 창업진흥원으로부터 발생한 환수금 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자(기업)

< ③ 조건 예외 대상 (사업 신청·접수 마감일 기준) >

1. 사업 신청·접수 마감일까지 환수금 등을 전액 반환 완료한 자
2. 환수금 등에 대해 회생 또는 파산절차에서 법원의 면책 결정을 받은 자
3. 환수금 등에 대해 분할납부를 승인받아 정상 납부 중인 자 (분할 상환금을 연속 또는 누적하여 2회 이상 미납한 경우는 환수금 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것으로 봄)

④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」 제4조(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)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(기업) ([붙임 3] 지원 제외 대상 업종 참조)

⑤ 중소벤처기업부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 중 [붙임 4]에 명시된 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했던 이력이 있는 자(기업) ※ 중단(중단처분·중도포기자) 포함

⑥ 2025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·공공기관의 '창업 사업화 지원사업*'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(기업) ※ 중단(중단처분·중도포기자) 포함

* 단, 공고사업과 동일년도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이 아닌 경우 또는 지자체 지원사업은 협약 시작·종료일 등 협약 잔여 기간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

* 「2025년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(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-626호)」 내 중앙부처가 운영하는 창업지원사업 중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,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창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 ([붙임 5] 참조)

⑦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(기업)

⑧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 (사업비 계좌)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(기업)

* 「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의2제1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의 신고·등록이 되지 않은 자 (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, 가상화폐 거래소업, 가상화폐 개발업,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및 자문업 등)

⑨ 2025년 동 사업 주관기관의 전담조직의 장, 전담/겸직인력으로 참여 중 또는 참여 예정인 자

⑩ 「근로기준법」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(기업)

⑪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의2(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)에 따라 수행 대상에서 배제된 자(기업)

⑫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(기업)

□ 의무 및 역할

- 선정자는 「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」 및 「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」, 「동 사업 세부관리기준」, 협약서 등의 사항을 준수하며, 사업 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
 - * 지침 및 기준 등은 선정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
- 선정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 완수하여야 함
- 선정자는 적법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수령한 정부지원사업비를 지급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함
- 선정자는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,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
- 선정자는 협약종료일로부터 5년간 이력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 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
- 선정자는 자기부담사업비(현금)를 창업진흥원이 정한 기한 내에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, 현물 투입이 있는 경우 해당 증빙 자료를 구비하여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
- 창업기업이 법인인 경우 사업 운영과 사업비 관리 책임은 법인에 있으며, 사업비의 유용·횡령·편취 등 부적정 사용에 대한 사업비 환수 시 모든 책임은 창업기업 대표(선정자)에게 있고, 지침 및 기준 등에 따라 제재 및 채권추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
- 선정자는 대표자 사망, 법인전환 등 정당한 사유를 제외하고 협약종료일로부터 1년 이상 창업기업을 유지하여야 함
 - 정당한 사유 없이 창업 유지 의무 미이행 시, 중소벤처기업부·전문기관 창업지원사업 1년 참여제한 등 제재 조치 부여

4

접수방법

□ **접수 기간** : '25년 2월 24일(월) ~ 3월11일(화), 16:00까지

< 유의 사항 >

- ① 신청 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, **마감일 2~3일 이전에 'K-Startup 누리집' 가입 및 사업 신청**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
 - * 신청·접수는 **16:00 정각에 종료**(신규 신청 불가). 다만, 16:00 전에 1단계(약관동의) 후 신청서 작성 단계에 진입하여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경우, 18:00까지 작성 항목 수정,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 추가 업로드 등 가능
- ② 온라인 신청서 작성 이후 **'제출완료' 버튼을 클릭해야 최종 접수가 완료**됨
- ③ **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**하고, 접수된(18:00 이후) 사업계획서 등 일체 내용은 **수정 및 삭제 불가**

□ **접수 방법**

○ K-Startup 누리집 온라인 신청·접수 (www.k-startup.go.kr)

- 신청·접수 시, K-Startup 누리집을 통해 ① **실명인증** 및 ② **기업인증을 실시**하여야 하며, 사전에 **회원가입 및 실명인증 필요**

* **실명인증** : 서울신용평가정보(SCI)를 통한 개인 실명인증 진행(외국인, 개명인, 미성년자 등 실명 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, 사전 실명 등록 및 적용 절차 진행 필수)

** **기업인증** : 공동인증서(기업용), 금융인증서, SCI기업실명인증, 국세청사업자 확인 중 택1

*** 온라인 사업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'**별첨 5**' 사업 신청 매뉴얼' 참고

< 유의 사항 >

- ① **반드시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이 신청**해야 하며, **타인이 신청하는 경우 탈락 처리**
- ② 창업기업은 사업 신청 시, **희망하는 1개의 주관기관 선택**
 - * 해당 주관기관에서 평가 및 사업비 관리, 창업프로그램 등 제공(접수 마감 후 변경 불가)
 - ** 신청 시 사업계획서상 '주관기관'과 시스템 접수 '주관기관' 동일 여부 필수 확인
 - ※ **상이한 경우, K-Startup 시스템의 접수 기준으로 평가**
- ③ K-Startup 누리집 **신규 가입 시**, 아이폰 또는 휴대폰 개인인증을 통한 **본인 인증 필수**. **서울신용평가정보(SCI)에 실명(개명)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아 실명 확인이 불가한 경우** K-Startup 누리집 가입 및 사업 신청이 제한되므로 유의

□ 제출 서류

- 사업계획서 1부 ([별첨 1] 양식)

* 모집공고에 첨부된 사업계획서 양식 활용 (그 외 양식 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)

- 기타 제출서류 각 1부 (해당 시, [별첨 2]의 '증빙서류 제출 목록 안내' 참고)

제출서류	제출 방법	비고
① 사업신청서	온라인 입력	-
② 사업계획서	파일 첨부	용량 제한 30MB
③ 증빙서류 (필수 증빙 및 가점 관련 증빙서류 등 포함) * 관련 증빙서류 누락 시 평가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		

* 가점 증빙서류는 사업 신청 시 제출하며, 미제출 시 가점으로 불인정

5 평가 및 선정 절차

- **평가 절차** : 3단계 평가 (서류 → 심층인터뷰 → 발표)를 통해 최종 선정

* 선정평가 운영 및 평가 일정, 평가 결과 등은 선택한 주관기관에서 안내 예정

< 창업기업 선정평가 절차(안) >

① 요건검토	② 서류평가	③ 심층 인터뷰	④ 발표평가	⑤ 최종 선정
자격기준 검토 및 서류평가 대상자 확정	사업계획서 서면 평가 (2배수 내외 선정)	창업아이템 관련 대표자 인터뷰 (서류평가 통과자 대상)	서류평가 통과자 대상 발표 및 질의응답 (30분 이내)	정부지원사업비 등 선정 확정
'25.3월 중	'25.3월 말	'25.4월 초	'25.4월 말	'25.4월 말 또는 5월 초

신청자에 대한 요건검토, 사업계획서 유사·중복성 검토는
창업진흥원 및 주관기관에서 상시 진행하며,
선정·협약 이후에도 신청자격 미충족 등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·협약 취소 처리 예정

※ 상기 일정은 신청자(기업)의 수 등 대내·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□ 평가 방법

① **요건검토** : 사업계획서,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신청자격 등 검토

② **서류평가** :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지표(가점 포함)에 따라 평가를 시행, 발표평가 대상자 확정(최종 선정 규모의 2배수 내외)

- 서류 또는 발표평가 면제 대상일지라도, 사업 신청·접수를 완료하여야 하며, 공고문상의 신청 자격 등을 충족하여야 함

- 서류평가 통과자를 대상으로 ‘창업기업’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*를 제출받아 검토할 예정이며, 신청 자격 위배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발표평가 또는 협약 대상에서 제외

* 사실증명(총사업자등록내역), 사업자등록증명, 폐업사실증명,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**서류평가 통과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 예정**

< 서류평가 가점 및 면제 대상 >

구분	대상 기업	점수	비고(제출서류 등)
가점 (최대 3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인공지능(융합혁신) 대학원 졸업생 인공지능대학원(10개) : 고려대, 광주과학기술원, 서울대, 성균관대, 연세대, 울산과학기술원, 중앙대, 포항공대, 한양대, KAIST 인공지능융합혁신대학원(9개) : 경희대, 동국대, 부산대, 아주대, 이화여대, 인하대, 전남대, 충남대, 한양대 ERICA 	2점	[별첨 2] '증빙서류 제출 목록' 안내 참고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('23.2.17.~'25.2.16.) 정부 주관 전국 규모 창업경진대회 장관급 이상 훈격 수상자 다수의 수상 증빙을 제출하더라도 가점은 최대 1점 	1점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기후테크 분야 창업기업 (클린테크) 재생에너지, 에너지신산업, 탈탄소에너지 (카본테크) 탄소포집, 공정혁신, 모빌리티 (에코테크) 자원순환, 폐기물절감, 업사이클링 (푸드테크) 대체식품, 스마트식품, 애그테크 (지오테크) 우주기상, 기후적응, AI·데이터금융 * 기후테크 세부유형(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, '23년) 	1점	사업계획서 내용으로 확인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최근 1년* 이내 1억원(현금) 이상 투자유치 실적을 보유한 창업기업 * 투자계약일은 최근 1년('24.2.17.~'25.2.16.) 이내이며, 해당 투자금의 입금은 '25.3.11.까지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	1점	투자계약서, 주주명부, 입금증 등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의 추천을 받은 입주기업 초기창업패키지 신청 자격에 부합하며, 별도 추천을 받은 자 	1점	제출 불필요 (창업진흥원 확인)

구분	대상 기업	비고(제출서류 등)
서류평가 면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'25.1월에 개최한 CES에서 혁신상을 수상한 기업 * 단, 중소벤처기업부 K-스타트업 통합관에 참가한 기업 중 수상 아이템, 수상기업, 수상자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 	제출 불필요 (창업진흥원 확인)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'24년 도전! K-스타트업 왕중왕전 진출한 기업 - 도전! K-스타트업 왕중왕전에 진출(수상)한 아이템과 핵심 요소가 동일하여야 하며, 서류평가 면제는 팀당 1회에 한함 (반드시 팀원 간 협의를 통해 1명에 한하여 신청하여야 함) 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민간기관이 운영하는 창업지원 프로그램 졸업기업 중 해당 기관의 추천을 받은 기업 * 민간기관 : KB금융그룹, KB국민카드, SK텔레콤, LG사이언스파크 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'성실경영 심층평가' 통과기업 중 청년기업* - 대상자 : 성실경영 평가(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3조)를 통과한 기업 중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통과한 기업 * 청년기업 : 대표자의 연령이 만 39세 이하인 창업기업 	[별첨 2] '증빙서류 제출 목록' 안내 참고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예비창업패키지 지원사업 '최우수' 판정 기업 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재도전성공패키지 지원사업 '최우수' 판정 기업 	

③ **심층 인터뷰** : 심층 인터뷰를 통해 창업 아이템의 기술성·우수성, 성과 창출 가능성 검증

- 심층 인터뷰는 창업기업 대표자(신청자)의 참석을 원칙으로 하며, 인터뷰 결과는 발표평가 시 참고 자료로 활용

* 운영시간 : 30분 이내 (창업자 경력사항 및 사업계획(아이템) 관련 질의응답) 예정, 현장 참석을 원칙으로 함

** 서류평가 면제자도 심층 인터뷰에 참여하여야 하며, 창업기업 대표자(신청자) 참여 원칙

④ **발표평가** : 제품·서비스 개발 필요성, 개발계획, 시장진입 및 성과 창출 전략, 창업기업 대표자 및 팀원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

- 발표평가는 창업기업 대표자(신청자)의 참석을 원칙으로 하며,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제품·서비스에 대해 심층 평가

* 평가시간 : 30분 이내 (발표 15~20분 이내 + 질의응답)

** 평가방법 : 대면평가를 원칙으로 하되, 상황에 따라 온라인 평가로 변경 가능

- 우선 선정 대상 기업도 정부지원사업비 배정을 위해 발표평가에 참여하여야 함

< 우선 선정 대상 >

구분	대상 기업	비고 (제출서류 등)
우선 선정	• '24년 도전! K-스타트업 왕중왕전 수상기업(대상, 최우수상) - 수상 아이템과 핵심요소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	제출 불필요 (창업진흥원 확인)
	• '25.1월에 개최한 CES에서 최고혁신상을 수상한 기업 * 단, 중소벤처기업부 K-스타트업 통합관에 참가한 기업 중 수상 아이템, 수상기업, 수상자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	
	• '24년 'D-DAY'(디캠프), '정주영 창업경진대회'(아산나눔재단) 입상자 중 해당 기관의 추천을 받은 기업	

⑤ **최종선정** : 발표평가 고득점자 순으로 지원대상자 선정

- 최종선정 통보일 다음날로부터 3일 이내(3일차 17시까지, 휴일불산입) 「초기창업패키지」 협약체결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
 - * 기간 내 협약체결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, 선정이 취소되며 차순위자(후보자)에게 사업 참여 기회 부여
- 주관기관별 선정 규모 내에서 최종 지원기업을 선정하고, 정부 지원사업비*를 배정하여 최종 확정 공고
 - * 창업기업 선정평가 결과 및 사업비 사용계획 적정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차등 배정
- 평가 과정에서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창업기업은 주관기관 또는 창업진흥원이 별도 현장실사를 진행할 수 있음
 - * 선정평가 결과, 창업기업 역량이 본 사업 운영 목적 및 요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지원 예정규모 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음

□ **평가지표**

- 창업 아이템의 개발 배경 및 필요성, 사업기간 내 개발 계획, 사업화를 위한 차별성, 수익모델 등 성장전략, 대표자(신청자) 및 창업기업 보유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
 - * 주관기관 선정 규모와 관계없이 평가 단계별 점수가 60점 미만일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

< 서류·발표 평가지표 주요 내용 >

평가항목	세부 내용
문제인식	• 창업 아이템의 개발 배경 및 필요성 등
실현가능성	• 창업 아이템의 사업기간 내 개발 또는 구체화 계획 등
성장전략	•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차별성, 수익모델, 자금조달 방안 등
팀(기업) 구성	• 대표자 및 고용 (예정)인력이 보유한 기술 역량과 노하우 등

□ 사업 운영일정 ※ 세부 일정은 대내·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

◆ 창업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창업기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.

- ① 동 사업은 창업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,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 신청,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「형법」, 「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」,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, 「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」 등에 따라 **형사처벌 또는 정부지원 사업비 전액 환수 및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**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 - ② 동 사업비의 부정수급을 행할 경우 **부정 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**될 수 있습니다.
 - ③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, 작성자(대필자)와 신청자(대표자, 창업기업) 등 관련자 전원이 **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**될 수 있습니다.
- ※ 사업 신청 과정에서 **제3자(컨설턴트 등)가 선정을 담보로 특정 사례를 요구하거나 접근해 온 경우, 아래 방법에 따라 신고**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* **창업진흥원 누리집(www.kised.or.kr) > 고객센터 > 기업민원 피해신고**
- ④ 중소벤처기업부는 「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」 제32조 및 「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고의,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**해당자를 고발 조치**할 수 있습니다.

□ 신청 시 유의사항

- 동 사업 신청은 해당 창업기업의 대표자가 하여야 하며, 동 사업 신청자가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상의 신청자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 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될 수 있음
- 동 사업 신청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,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용을 허위 기재, 도용, 누락한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-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·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, 중소벤처기업부(창업진흥원 등)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(3년) 및 정부지원사업비 전액 환수 등의 제재가 취해짐

- * 합의 하에 공동 작성한 동일·유사 사업계획서로 선정된 경우일지라도, 공동작성자 모두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·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함으로 판단하여 동일하게 평가대상 제외, 선정취소, 참여제한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음
- ** 동일·유사 여부의 판단은 본 공고에 따른 신청에만 국한되지 않고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모든 창업지원사업에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함
- '25년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·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과 동시수행 (협약체결) 불가.
단, '25년도 이전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은 협약 시작·종료일 등 협약 잔여기간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
- * (주의) 2개 이상 사업의 공고 기간이 겹쳐 중복으로 선정되는 경우, 반드시 1개의 사업을 선택하여야 하며, 최초 협약을 체결한 1개의 사업만 수행 가능
- 동 사업 신청자는 공고문에 명시된 신청·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'신청 제외 대상'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
-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창업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하고,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
- * 선정 완료 후 공동·각자대표에 대한 신청자격을 재검토하여 신청 제외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,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
- 동 사업 신청자는 '25년 동 사업 창업기업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으로 참여 불가

□ 평가 중 유의사항

- 신청자격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인한 신청자격 확인 불가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, 가점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시 가점 부여 대상에서 제외
- 전 평가과정에 창업기업 대표자(신청자)가 직접 참여하여야 하고, 불참 시 선정 대상에서 제외
- 평가 단계별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과통보일 다음 날로부터 6일 이내 (휴일 포함) 1회에 한하여 평가를 운영한 주관기관에 신청

- 주관기관은 평가 과정의 공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기업 대표 동의하에 발표평가 전 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음

□ 선정 후 유의사항

- 협약체결 확약서를 제출할 경우, 확약서 제출 이전에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및 창업성공패키지(청년창업사관학교, 글로벌창업사관학교)의 선정 절차(확약서 제출 전까지의 모든 단계)에서 '제외' 처리됨
 - 단,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및 창업성공패키지(청년창업사관학교, 글로벌창업사관학교)에 이미 '협약체결 확약서'를 제출하여 협약체결 예정인 사업이 있는 경우, 최초 '협약체결 확약서'를 제출한 1개의 사업만 협약체결(수행) 가능
- 제출한 협약체결 확약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, 향후 사업 선정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
-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,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, 선정 또는 협약 취소,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등의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음
- 선정자는 동 공고문 및 「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」, 「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」, 「동 사업 세부관리기준」,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의 안내자료를 준수하여야 하며,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선정자에게 있음
- 선정 이후라도 선정자에 대한 신청자격 및 사업계획의 유사성 등을 재확인하여 요건 불충족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,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
- 정부지원사업비는 협약 후 분할하여 지급될 수 있으며, '창업사업 통합정보관리시스템'을 통해 총 사업비가 관리·운영됨

- 동 사업의 수시·최종 점검 결과에 따라 창업기업 사업지원 중단 또는 동 사업의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
- 협약기간 내 대표자 변경 시, 협약취소 등 제재 조치가 있을 수 있음
- 협약기간 중 대표자가 구속 등으로 그 기간이 2주 이상 유지되어 부재가 발생하는 경우, 관련 지침에 따라 사업 선정 취소 또는 협약 해약,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조치가 될 수 있음
-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은 선정된 창업기업의 사업비 횡령,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조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채권추심 등의 행정 행위를 취할 수 있음
- 선정자는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(사업비 계좌) 개설 및 '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'을 통한 사업비 지출(회계처리)이 가능하여야 함
 - * 지정 은행의 계좌개설 및 거래가 불가능한 자의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
- 「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의2 제1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, 금융회사로부터 계좌개설 불가 등의 금융거래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협약체결 및 사업화 지원이 불가함

7

기타 사항

□ 문의처

- (시스템 문의) 국번없이 1357
- (사업 문의) 주관기관 담당자

구분	권역	주관기관명	선정규모	담당자 연락처	
1	서울	씨엔티테크	23개사	02-3152-8660	
				02-3152-6953	
2		서울과학기술대학교	23개사	02-970-9024	
				02-970-9708	
				02-970-9152	
				02-970-9027	
3		고려대학교	23개사	02-3290-4812 02-3290-4814	
4		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	22개사	02-739-9573 02-739-7264	
5		경인	인하대학교	23개사	032-860-9371
032-860-9153					
6	수원대학교		23개사	031-229-8524 031-229-8561 031-229-8714	
7	단국대학교	22개사	031-8005-2862		
031-8005-2864					
031-8005-2866					
031-8005-2867					
8	충청	한국수자원공사	23개사	042-629-5362	
				042-629-5363	
				042-629-5364	
				042-629-5365	
				042-629-5366	
				042-629-5367	
9	국립한밭대학교	22개사	042-828-8663		
042-828-8664					
10	순천향대학교	22개사	044-530-4836		
			044-530-4835		

구분	권역	주관기관명	선정규모	담당자 연락처
11	강원	가톨릭관동대학교	22개사	033-649-7198
				033-649-7759
12	호남	국립순천대학교	23개사	061-750-5433
				061-750-5437
13	호남	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	23개사	062-364-9162
				062-364-9163
				062-364-9164
14	동남	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	23개사	051-749-8969
				051-749-8959
				051-749-8977
				051-749-8958
				051-749-8997
15	대경	영산대학교	22개사	055-380-9659
				055-380-9103
16	대경	동아대학교	23개사	051-200-6365
				051-200-6452
17	대경	경북대학교	23개사	053-950-7657
				053-950-7655
				053-950-7659
18	대경	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	23개사	053-359-3625
				053-759-8618
19	제주	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	22개사	064-754-4407
				064-754-4408

붙임 1

2025년 초기창업패키지 주관기관별 사업설명회 일정

주관기관명	개최일시	지역	장소
씨엔티테크	2025.02.20.(목), 15:00~	온라인	https://us02web.zoom.us/j/5493535828
	2025.02.27.(목), 15:00~	온라인	https://us02web.zoom.us/j/5493535828
서울과학기술대학교	2025.02.26.(수), 11:00~	온라인	https://seoultech.zoom.us/j/81183506322 * 회의 ID: 811 8350 6322
	2025.03.05.(수), 15:00~	서울	서울과학기술대학교(상상관 11호)
고려대학교	2025.02.21.(금), 15:00~17:00	온라인	https://korea-ac-kr.zoom.us/j/9501676433?pwd=WxZOQnF4V1ZCMlJmZlBvamFFBelZpdz09 * 회의 ID: 950 167 6433 / 암호: Crimson369
	2025.02.26.(수), 14:00~16:00	서울	고려대학교(자연계 캠퍼스) 하나스퀘어 지하 1층 멀티미디어룸
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	2025.02.19.(수), 14:00~16:00	서울	용산구 청년창업지원센터
	2025.02.20.(목), 10:00~12:00	서울	서울창업센터 관악
	2025.02.25.(화), 9:30~11:30	서울	강동구 청년해냄센터 창업교육장
	2025.02.27.(목), 10:00~12:00	서울	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스타트업빌리지
	2025.02.27.(목), 13:00~13:30	온라인	https://us04web.zoom.us/j/72952221038?pwd=zqQGOCdxGSBJ9E6yMvG1IuIaZjrccn.1 * 회의 ID: 729 5222 1038
인하대학교	2025.02.27.(목), 14:00~	온라인	https://inha-ac-kr.zoom.us/j/87912217846?pwd=z3XSH4iCLrMI5TJf4Q6ilMq3k73X4a.1
	2025.02.28.(금), 13:00~	온라인	https://inha-ac-kr.zoom.us/j/87912217846?pwd=z3XSH4iCLrMI5TJf4Q6ilMq3k73X4a.1
수원대학교	2025.02.24.(월), 14:00~	경기	수원대학교(미래혁신관 110호)
	2025.02.25.(화), 14:00~	온라인	https://url.kr/9pgr3b
단국대학교	2025.02.21.(금), 14:00~	온라인	https://us02web.zoom.us/j/83159181250?pwd=wz0E54Y89u2RCb01OzaazvFuW84Lb2.1
	2025.02.25.(화) 14:00~	경기	단국대학교(글로벌산학협력관)
한국수자원공사	2025.02.20.(목), 14:00~	온라인	https://us06web.zoom.us/j/85354433741
	2025.02.25.(화), 10:00~	대전	대전역 한국철도공사(본사) 2층, KTX 산천
국립한밭대학교	2025.02.19.(수), 16:00~18:00	온라인	https://hanbat.zoom.us/j/83572815102 * 회의 ID: 835 7281 5102
	2025.02.25.(화), 16:00~18:00	대전	국립한밭대학교 유성덕명캠퍼스(S3동 101호)

주관기관명	개최일시	지역	장소
가톨릭 관동대학교	2025.02.19.(수), 15:00-16:00	강원	상지대학교 벤처창업관(코워킹스페이스)
	2025.02.20.(목), 15:00-16:00	강원	가톨릭관동대학교 요한보스코관 508호
	2025.02.21.(금), 15:00-16:00	온라인	https://us06web.zoom.us/j/89291836567?pwd=0nOZuBZrMCNbfVVRbi8iH8y0mv9iAMt.1
순천향대학교	2025.02.26.(수), 14:00~14:30	온라인	https://sch-ac-kr.zoom.us/j/81083155387?pwd=TsspyMpDDyIjn5yLbM1TFklFpl1eyy.1
	2025.02.27.(목), 14:00~14:30	충남	순천향대학교(공학관 2층, 9223호)
국립 순천대학교	2025.02.21.(금), 10:00~	온라인	https://us05web.zoom.us/j/3643724254?pwd=jvPYQ6F0Yng3OB8AsWELCFknlrb5.1&om=8441646701 * 회의 ID: 364 372 4254
	2025.02.25.(화), 16:00~	전남	순천대학교 국제문화컨벤션관 301호
광주창조 경제혁신센터	2025.02.20.(목), 14:00~17:30	광주	광주 스테이션G 다목적홀
	2025.02.27.(목), 14:00~16:00	온라인	https://us06web.zoom.us/j/3242180815?pwd=U1L2KE9L8t1FQe0wTtSSj6yCERDd.1&om=84294819398
부산창조 경제혁신센터	2025.02.24.(월), 14:00~16:00	부산	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컨퍼런스룸
	2025.02.25.(화), 14:00~16:00	온라인	https://zoom.us/j/96354402890?pwd=FDHGnznLbR3b1M768htFZKDYTCy9f.1
영산대학교	2025.02.21.(금), 13:00~15:00	울산	울주군 창업 일자리 종합지원센터
	2025.02.27.(목), 20:00~21:00	온라인	https://us06web.zoom.us/j/87177685963?pwd=Y0ViOXB3RW5WZjB5bWhWN2NJa01Ddz09
동아대학교	2025.02.26.(수), 14:00~16:00	부산	동아대학교 승학캠퍼스(산학관 3층 311호)
	2025.02.27.(목), 14:00~15:00	온라인	https://us02web.zoom.us/j/3717757771?pwd=UnJsQ1BkQ1FacUgyZ24yOU9xRVJ1dz09
경북대학교	2025.02.20.(목), 17:00~	온라인	https://www.youtube.com/@%EA%B2%BD%EB%B6%81%EB%8C%80%ED%95%99%EA%B5%90%EC%B0%BD%EC%97%85%EC%A7%80%EC%9B%90%EB%8B%A8
	2025.02.25.(화), 14:00~	대구	경북대학교 글로벌플라자 307호
대구창조 경제혁신센터	2025.02.20.(목), 14:00~	대구	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(1층 C-quad)
	2025.02.27.(목), 14:00~	온라인	https://us06web.zoom.us/j/83854143333
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	2025.02.19.(수), 14:00-16:00	온라인	https://youtube.com/live/ctymSsqjhUo?feature=share
	2025.02.20.(목), 14:00-16:00	제주	제주특별자치시 서귀포 스타트업베이
	2025.02.28.(금), 14:00-16:00	서울	서울 메리히어 메리홀

붙임 2

창업 여부 기준표

신청기업구분	상세 구분		창업여부	
개인기업	창업(사업을 개시한 날부터) 7년 이내		창업 기본요건	
	타인으로부터 상속/증여	기존 사업과 동종의 사업 개시	창업아님	
		이종	창 업	
	기존 개인사업자 유지	-	창업아님	
	기존 개인사업자 폐업	이종창업	-	창 업
			폐업 3년 초과	창 업
		동종창업	폐업 3년 까지	창업아님
부도/파산 - 2년 초과			창 업	
부도/파산 - 2년 까지	창업아님			
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	-	창 업		
법인기업	창업(사업을 개시한 날부터) 7년 이내		창업 기본요건	
	기존 개인사업자 폐업	이종창업	-	창 업
			폐업 3년 초과	창 업
		동종창업	폐업 3년 까지	창업아님
			부도/파산 - 2년 초과	창 업
			부도/파산 - 2년 까지	창업아님
	동종전환	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	개인사업자의 창업자 지위승계	
	기존 개인사업자 유지	이종창업	-	창 업
			동종창업	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% 초과 또는 최대주주
		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% 이하이면서 최대주주 아님		창 업
	자회사 여부	법인주주(임원 포함)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% 초과 소유	창업아님	
과점주주 여부	다른 법인의 과점주주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% 초과 소유	창업아님		
회사형태 변경	동종유지		창업아님	
	이종		창 업	

※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: 양도기업(기존 개인사업자)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인 창업기업(창업 여부 기준표에 따라 창업여부 판단)이고, 양도-양수기업 간 대표자 동일, 동종 업종, 양도기업(기존 개인사업자) 폐업 완료, 양도기업의 권리·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야 함

※ 동종의 범위 : '한국표준산업분류(제11차)'를 기준으로 세세분류(코드번호 5자리)가 모두 일치하면 "동종"
* 통계청 통계분류포털 : kssc.kostat.go.kr

※ 과점주주 :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

붙임 3**지원 제외 대상 업종**

- ▶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(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)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(기업)

NO.	대상 업종	코드번호 세세분류
1	일반유흥주점업	56211
2	무도유흥주점업	56212
3	카지노 운영업	91242
4	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	91249
5	그 밖에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서 중소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	-

*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(통계청, kssc.kostat.go.kr) 참고

붙임 4**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 제외 사업 목록**

- 초기창업패키지 (실험실특화 포함)
- 창업도약패키지 * 성장촉진 프로그램 제외
- 창업성공패키지 청년창업사관학교
- 창업성공패키지 글로벌창업사관학교
- 창업중심대학 * 예비트랙 수행기업 제외

붙임 5**2025년 동시수행 불가한 창업지원사업 목록**

연번	창업지원사업명	소관 부처
1	· 예비창업패키지	중소벤처기업부
2	· 초기창업패키지	중소벤처기업부
3	· 창업도약패키지	중소벤처기업부
4	· 초격차 스타트업 1000+ 프로젝트	중소벤처기업부
5	· 민관공동 창업자발굴 육성사업(TIPS 사업화)	중소벤처기업부
6	· 통합창업패키지(특화창업패키지) 지원	중소벤처기업부
7	· 창업중심대학	중소벤처기업부
8	· 재도전성공패키지	중소벤처기업부
9	· 신사업창업사관학교	중소벤처기업부
10	·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	중소벤처기업부
11	· 창업성공패키지(청년창업사관학교)	중소벤처기업부
12	· 창업성공패키지(글로벌창업사관학교)	중소벤처기업부
13	·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	중소벤처기업부
14	· 딥테크 밸류업 프로그램	중소벤처기업부
15	· 예술기업 성장지원	문화체육관광부
16	· 스포츠산업 예비초기창업창업도약 지원	문화체육관광부
17	· 스포츠산업 창업중기(액셀러레이팅) 지원	문화체육관광부
18	· 콘텐츠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	문화체육관광부
19	· 콘텐츠 액셀러레이터 연계 사업화 지원	문화체육관광부
20	· 콘텐츠 투자 연계 사업화 지원	문화체육관광부
21	· 선도기업 연계 동반성장 지원	문화체육관광부
22	· 전통문화 청년창업 육성지원 사업	문화체육관광부
23	· 관광벤처사업 공모전	문화체육관광부
24	·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	환경부
25	· 농식품 벤처육성지원	농림축산식품부
26	· 대전 방산혁신 클러스터 방산진입형 드론평화 창업지원	방위사업청
27	· 데이터 활용 사업화 지원(DATA-Stars)	과학기술정보통신부